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신 “동물성 식량의 주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 서명부 전달”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수호를 위해 식량 자급률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동물성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식량주권의 수호에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1.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한 거국적 식량안보대책 수립
2. ‘무역이득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보상제도 마련을 통해 축산업 위축과 손실 최소화
3.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안정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
4. 축산물의 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

먼저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 식품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 목표치에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자급률 목표치도(‘20년 목표 한우 48%, 돼지 80%, 닭고기 80% 등) 포함되어 있어, 식물성 식품뿐 아니라 동물성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내 축산물 시장의 안정적 기반확보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하여, ‘무역이득공유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산업별로 발생할 순이익, 순손실을 분석하여, FTA 협정의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축산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첫 번째로 개방 이후 특정 산업에서 발생한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개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한 것인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등 부담대상자와 부담규모 산정이 매우 어려운 점, 두 번째로 이득의 배분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현행 법체계 상 부적합한 면이 있는 등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부는 대기업이 FTA 수혜이익의 일부를 FTA기금에 자발적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 기업이 농어촌·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고향후원금제’ 등 FTA 이득공유제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축산농가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 중이며(‘13년 사업 규모 3,817억),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13.6월 이후 6개 축종(한우, 돼지, 닭고기, 우유, 계란, 오리)에 대해 축산물수급관리 협의회를 발족하고 민·관 협업에 의한 수급불안 최소화 및 축산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에서는 FTA 등 개방에 대응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미, 한·EU FTA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축산강국인 영연방 3개국과의 FTA 체결에 대응한 대책도 마련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부는 축산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며, 영양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 농협 등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물성 식품의 영양적 가치와 경제적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영양상태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산적 제언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